

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

○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

- 근거 조항: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행정명령기간: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과태료부과 계도기간: 계도기간 30일 부여 (~20.11.12)
- 과태료 금액: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 (시행:20.10.13)
- 마스크 종류: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 ※ 암사형 마스크, 벨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- 부과기준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

○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

※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

부과 장소	부과 대상
집합제한 시설* ※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	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(방역수칙 의무화) 시설의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
대중교통	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
집회·시위장	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
의료기관	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
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	입소자·이용자들 돌보는 종사자

- * (1단계 : 집합제한시설) 유흥주점, 클럽, 단란주점, 김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화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- (2단계 : 집합제한시설) 학원(300인 이하), 단, 9인 이하 교습소 제외, 오락실, 일정한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150㎡ 이상), 뷔페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 사우나, 실내 체육시설, 멀티방 DVD방, 장례식장, PC방

○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

예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예외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 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 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•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